

1. 개정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6830호, 2019. 12. 24. 공포, 2020. 3.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장소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률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장소를 정하기 위해 교통사고 위험지수, 사고 유형 및 원인 등을 규정함(안 제14조의2, 별표5의2)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1월 중 실시 예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14조의3을 각각 제14조의3, 제14조의4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어린이 보호구역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장소)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은 별표5의2와 같다.
별표5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5의2]

어린이 보호구역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장소(제1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경우 다음 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1. 교통사고 위험지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명피해 사고 건수 및 사망·중상자 수
2. 사고 유형	○ 차대 사람, 차대 자전거 사고 건수
3. 사고 원인	○ 속도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건수
4. 보행조건	○ 보도와 차도 구분 여부 ○ 횡단보도 보행신호 설치 여부 ○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물(보도용 방호울타리,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 설치 여부
5. 도로조건	○ 과속방지를 위한 시설물(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고원식 횡단보도 등) 설치 여부

	○도로기하구조 상 운전자 시야 확보 유무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여부 ○도로 폭, 차로 수 등 도로여건에 따른 위험도 여부
6. 기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요구 민원의 빈도, 지역주민 여론 수렴 결과 등 ○그 밖에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도 여부

비고

가. 위 표 제1호의 교통사고 위험지수, 제2호 사고유형 및 제3호 사고원인의 건수는 최근 3년간(당해 연도 제외) 어린이 사고로 한정한다.

나. 위 표 제1호의 교통사고 위험지수(ARI: Accident Risk Index)는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

$$ARI = \sqrt{KSI^2 + \text{사고건수}^2} / \text{년}$$

※ KSI(Killed or Seriously Injured : 사고심각성 대표 지표) : 사망자 수 + 중상자 수

※ 사고건수 : 인명피해사고 건수

다. 위 표 제4호 보행조건, 제5호 도로조건, 제6호 기타 항목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유관기관 및 어린이 교통안전 봉사 단체 등과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2. 일반기준의 예외

1. 일반기준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이 어려운 경우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4조의2</u>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범위) ①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73조 · 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u>제14조의3</u> (자전거를 타고 보도통행이 가능한 신체장애인) 법 제13조의2제4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u>제14조의2(어린이 보호구역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장소)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은 별표5의2와 같다.</u> <u>제14조의3</u> (현행 제14조의2와 같음) <u>제14조의4</u> (현행 제14조의3과 같음)

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73조 · 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교통기획과	
연 락 처	(02) 3150 - 0659